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근로자 채용공고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는 기본사업 보조업무를 수행할 공무원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채용부서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

2. 업무내용

채용등급	업무내용	채용인원
전문연구원 (다급)	○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연구업무 보조 등	1명

3. 채용내용 : 필수 자격 기준을 만족하고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자

구분	응시자격
전문연구원 (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-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, 연구 실적이 있는 자 -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 혹은 연구실적이 있는 자 -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.연구실적이 있는 자 -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○ (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(전공 및 자격증 등) 기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영양학, 식품공학, 미생물학, (농)화학, 생명과학 등 관련 분야 - 영어 우수자, 운전면허 소지자 -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

4. 근무조건

- 가. 근무기간 : 채용계약일부터 ~ '23년 12월 31일까지
- ※ 계약기간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재계약 요건에 적합한 경우(예: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) 재계약 가능
- 나. 근무시간 : 주 40시간 근무, 1일 8시간(09:00~18:00)
- 다. 월 보수
- 전문연구원(다급) 1호봉 기준 : 월 2,206,300원 ('23년 공무원근로자 보수지급계획에 따름)
 - ※ 「2023년도 계약직근로자 보수지급 계획」에 따른 책정액
 - ※ 임금 외 매월 정액급식비(140,000원) 별도 지급
 - ※ 근무시간 외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
 - ※ 사업에 따라 근무기간(계약 종료) 변경 가능
 - ※ 채용 6개월 이후 명절휴가비 지급

라. 근무지

나라기움 대구통합청사 (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52-1)

5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
가. 제출서류 :

- ① 응시원서(이력서 및 채용지원서) 1부(채용시스템에 입력)
 - ② 자기소개서 1부(채용시스템에 입력)
 - ③ 주민등록초본 1부(남녀 공통제출,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)
 - ④ 최종학력 증명서
 - ⑤ 성적증명서 1부(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)
 - ⑥ 연구 목록 1부
 - ⑦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 - ⑧ 어학성적서, 경력증명서*,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
- *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
- ※ ①~⑤는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, ⑥~⑧은 해당자에 한함

나. 제출방법 :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<http://employ.mfds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다. 담당자 : 유해물질분석과 김현정 주무관(053-589-2782)

라. 접수기간 : 2022. 12. 30.(금) 16:00 ~ 2023. 1. 24.(화) 18:00

※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

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.
※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.

마.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'에 따라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괴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6. 채용방법

가. 1차 서류심사 :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(2023. 1. 25. 예정)

나. 2차 면접심사(예정) : 2023. 1. 27.(금)

다. 최종 합격자 통보(예정) : 2023. 1. 30.(월)

※ 합격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접 차순위자 합격처리 함.